

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(제74조의2 관련)

위반사항	근거법령	처분기준
1.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. 2일 이상 30일 미만(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하 같다)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. 30일 이상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. 5일 이상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9조제7항	시정명령 해당품목 등록취소 시정명령
2.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(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49조제7항	시정명령
3. 3년 내에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9조제7항	해당품목 등록취소